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16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831(2021.1.16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832(2021.1.16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·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(1.16)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**지역간,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,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, 아래와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**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② 유흥시설 5종, 홀덤펍,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
-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·중단 조치
-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
-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,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끝.

교육부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김신혜

보건사무관

정희권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1.1.18.

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503 ((2021.1.18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814 전송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